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공기관의 회의기록 작성 대상 확대 등〉
■ 한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833호)

2025.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 속기록 생산의무 지정 회의 목록	1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준호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06. 13.
3. 회 부 일 : 2025. 06.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회의록 등을 작성해야 할 구체적인 회의의 종류 및 회의록의 작성 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회의록을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는 일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련 법률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 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정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공공기관이 주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주관기관이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이 아닐 경우 업무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이 회의록 등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1항 및 제5항).
- 나. 회의록에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이를 관리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2항).
- 다.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한 공공기관이 일정한 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제3항).
- 라.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모든 원격영상회의가 자동녹화 시스템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7조의2제6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의 작성 대상, 작성 주체, 작성 및 관리 방법, 비공개 기준, 원격영상회의 자동녹화 규정 등 정책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회의기록의 작성·관리·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현행	개정안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u><신설></u>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① (현행과 같음) <u><삭제></u> ③ · ④ (현행과 같음) <u>제17조의2(주요 회의의 기록물 생산)</u>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녹음기록을 생산하는 때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한다.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2.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현행	개정안
	3. <u>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u> 4. <u>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u> 5. <u>다른 법률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의 회의</u> 6. <u>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u> 7. <u>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의장이 참석하는 회의</u> 8. <u>제17조제1항에 따른 주요 정책 또는 사업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u> 9. <u>장관급 이상의 주요 지시 하달 또는 논의를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u> 10. <u>정책 자문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회의</u> 11. <u>그 밖에 회의록 등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u>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기록 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녹취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한 공공기관은 그 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의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관한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의 제출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⑤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회의를 소집 또는 주관하는

현행	개정안
	<u>공공기관이 작성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대상 회의의 참석자 중 회의 안전과 관련하여 업무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이 작성한다.</u> <u>⑥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여하는 모든 원격영상회의(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 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 녹화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격영상회의의 녹화 기록은 녹음기록으로 간주한다.</u>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¹⁾은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토한 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물로 생산하여야 함.²⁾

-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을 의미함(「공공기록물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① 공공기관은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로 생산하여야 한다.

《 현행 법령에 따라 기록물을 생산·관리하여야 하는 사항 》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관련 사항
2.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이에 상당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
3.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4.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 체결하는 주요 조약·협약·협정·의정서 등
5. 「국가재정법」상 대규모사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6. 그 밖에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조사·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한,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주요 회의에 대한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이하 ‘회의기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³⁾ 시행령에서는 회의기록 작성 대상 회의의 종류, 작성 및 관리 방법,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이하 ‘속기록등’)의 비공개 기준, 작성 주체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⁴⁾

- 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회의록의 작성·관리)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2.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3.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4.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5.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6.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
 7.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의 장 및 같은 조 제5호 중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이 참석하는 회의
 8.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9.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회의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이하 “지정회의”라 한다)는 회

그러나 실제 제도 운영과정에서는 주요 회의기록의 부실한 작성, 기록물 관리·보존 소홀, 회의기록의 소극적 공개 등 기록관리의 신뢰성 및 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⁵⁾

이에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회의기록의 작성 대상·주체, 작성·관리 방법, 속기록등의 비공개 기준 등을 법률로 상향하고, 작성 대상 회의의 범위를 확대하며, 원격영상회의 자동녹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회의기록 관리의 법적 근거와 책임 소재를 더욱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공공기관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회의기록의 체계적 보존과 공개 확대, 국민의 알 권리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해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녹취록을 포함한다)을 생산한 공공기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회의록(제2항 후단에 따른 회의의 경우에는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포함한다)은 그 회의를 소집 또는 주관하는 공공기관이 작성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대상 회의의 참석자 중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업무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을 정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작성하도록 한다.

⑤·⑥ (생략)

5) 연합뉴스(2022.11.9.) “회의록 부실 정황?...국가기록원, 게임위에 사실상 경고”

<https://www.yna.co.kr/view/AKR20221109084700017>

경향신문(2024.8.25.), “회의록 부실 생산, 이대로 좋은가”

<https://www.khan.co.kr/article/202408252036005>

《 현행 제도와 개정안 비교 》

구 분	현행 시행령	개정안
회의록 작성 대상 회의	1. 대통령 참석 회의 2. 국무총리 참석 회의 3. 주요 정책 심의·의견조정 목적의 차관급 이상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 4. 정당과의 업무협의 목적의 차관급 이상 참석 회의 5. 법정 위원회·심의회가 운영하는 회의 6. 지자체장, 교육감·교육장 참석 회의	1~6. (좌동)
	7.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기관의 장, <u>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u> 참석 회의	7.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참석 회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로 설립된 <u>각급 학교의 장</u> 포함)
	8.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호에 관한 심의·의견조정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 참석 회의	8. (좌동)
	-	9. <u>장관급 이상의 주요 지시 하달 또는 논의 목적</u> 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 참석 회의 10. 정책자문 목적으로 <u>차관급 이상 주요 직위자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회의</u>
	9. 그 밖에 회의록 작성이 필요한 주요 회의	11. (좌동)
속기록등 작성 대상 회의	아래 회의 중 <u>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u> 하는 회의 1. 대통령 참석 회의 2. 국무총리 참석 회의 3. 주요 정책 심의·의견조정 목적의 차관급 이상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 4. 법정 위원회·심의회가 운영하는 회의 5. 지자체장, 교육감·교육장 참석 회의	개정안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는 <u>모든 회의</u>
회의록 작성·관리 방법	◦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 포함 ◦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	좌 동
속기록등의 비공개	◦ 속기록·녹음기록(녹취록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10년간 비공개 가능 ◦ 대통령 참석 회의의 속기록·녹음기록은 15년간 비공개 가능	좌 동

구 분	현행 시행령	개정안
속기록등의 비공개에 관한 예외	-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조 사에 관한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의 제출 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작성 주체	- 회의를 소집 또는 주관하는 공공기관 - 주관기관이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업무연관성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	좌 동
원격영상회의 관련	-	차관급 이상 참석 원격영상회의는 자동 녹화기능을 갖춘 시스템 을 통하여 진행

다만, 개정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우선, 현행 제도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⁶⁾의 장이 지정한 주요 회의에만 속기록등의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⁷⁾ 개정안은 대부분의 회의로 작성 의무를 확대하고 있어 법 시행에 소요되는 행·재정적 부담과 실행 여건에 대하여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 제17조의2제1항제9호 및 제10호⁸⁾에 규정된 ‘주요 지시 하달 및 논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회의’라는 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5.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란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으로 구분한다.
- 7) 국가기록원은 97개 주요 회의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대상 회의로 지정하고 있음(참고자료 참조).
- 8) 개정안 제17조의2 ① 제9호: 장관급 이상의 주요 지시 하달 또는 논의를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제10호: 정책 자문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국장급 이상 공무원 및 자문기구 등의 내부 토론, 일상적 의견교환, 비공식적 자문 등 다수의 업무협회가 회의기록 작성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적용 여부 판단의 혼선, 기록 관련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결론적으로, 개정안은 공공기관 기록관리의 책임과 투명성 강화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회의기록 작성 대상 확대에 따른 행·재정적 부담 및 실행 여건에 대한 사전 점검 필요성과 속기록등 작성 대상 회의 기준의 명확화 방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는 주요 회의에 대한 속기록·녹음기록 작성 의무 강화 취지에 동의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경우 행정 부담이 과도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회의의 성격 및 중요도 등 속기록·녹음기록 작성 의무의 효용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확대하되, 그 밖의 회의에는 회의록만 작성하도록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헌법기관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8

참고

속기록 생산의무 지정 회의 목록(국가기록원)

구 분	회 의 명
대통령 참석 회의	-
국무총리 참석 회의 (25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국가산학협력위원회,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서해 5도 지원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수소경제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원자력진흥위원회,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중앙민방위협의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43개)	경제관계장관회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고용정책심의회, 국가교통위원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국가지식정보위원회, 국가통계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국방부 군무회의, 국방부 정책회의, 금융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바이오안전성위원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상생조정위원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섬발전심의위원회, 시·도 경제협의회,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외국인투자위원회,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자격정책심의회,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정보공개위원회,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철도산업위원회, 청소년정책위원회, 축산발전심의위원회,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항공정책위원회,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29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 기록물공개심의회, 기록물평가심의회, 대체역 심사위원회 전원회의,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무역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전원회의,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장비선정심의위원회,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학자금 지원제도 심의위원회,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지자체장, 교육감 등이 참석하는 회의	-